



주식회사 시티건설산업 / 시티이엔지

우30063 세종특별자치시 마은안로 13, 지하2층 커뮤니티센터(다목적실) / 전화 044-868-2620 / 전송044-868-2621 담당: 마명선

문서번호 : 시티건설산업 제 2022 - 120호
 : 시티이엔지

시행일자 : 2022. 02. 22.

수 신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참 조 :

경 유 :

제 목 : 가락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선결			지시	
접	일자		결재	
수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공급하는 가락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아파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아래와 같이 배정할 예정이며,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에서는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2022년 03월 16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가격, 평면 등 자세한 분양자료는 '2022년 03월 11일(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동 기한까지 대상자 명단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특별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 배정 회신 : 마명선 주임 010-2907-2836
 : mms102@cityenc.com

- 아 래 -

구분	59A		59B		59C		계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장애인	세종	1	(5)	-	-	-	-	6
	대전	-	-	1	(5)	-	-	6
	충남	-	-	-	-	1	(5)	6
국가유공자	1	(5)	-	-	1	(5)	12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1	(5)	-	-	12	
10년이상복무군인	1	(5)	-	-	1	(5)	12	
중소기업근로자	1	(5)	1	(5)	-	-	12	
북한이탈주민	1	(5)	-	-	-	-	6	
우수선수	1	(5)	-	-	-	-	6	
입주기업종사자	1	(5)	-	-	-	-	6	
합계	8	(40)	3	(15)	3	(15)	84	

별첨 : 1. 가락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_기관추천 특별공급_ 안내문

주식회사 시티건설산업
주식회사 시티이엔지



“가락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2.03.11.(금)]에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 사업주체 : (주)시티건설산업, (주)시티이엔지 / 시공업체 :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 입주시기 :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총 887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738세대, 기타 6세대를 제외한 143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계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장애인	1	(5)	1	(5)	1	(5)	18
국가유공자	1	(5)	-	-	1	(5)	12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1	(5)	-	-	12
10년이상복무군인	1	(5)	-	-	1	(5)	12
중소기업근로자	1	(5)	1	(5)	-	-	12
북한이탈주민	1	(5)	-	-	-	-	6
우수선수	1	(5)	-	-	-	-	6
입주기업종사자	1	(5)	-	-	-	-	6
합계	8	(40)	3	(15)	3	(15)	84

분양일정

구분	분양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03.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홈페이지(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사이버 분양사무소 개관	2022.03.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홈페이지(추후 별도 안내 예정)
특별공급 접수	2022.03.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 분양사무소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	2022.03.3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 조회 가능

분양가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에만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추천대상자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이상 복무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기업종사자 / 북한이탈주민 / 우수선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예치금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2.03.11.(금)]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구분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기본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포함하여 전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전체 발급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유의사항과 동일하게 발급
제3자 대리시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신청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 예정일 [2022.03.21.(월)]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분양사무소에서 접수(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가 가능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한 예비대상자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개별 조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신청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에 관계없이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과 1순위를 본인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중복 청약하여 당첨 시 둘 다 부적격(재당첨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등·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청약 당시 입력자료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고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후라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및 평면도

<p style="text-align: center;">조감도</p> 	<p style="text-align: center;">59A</p> 
<p style="text-align: center;">59B</p> 	<p style="text-align: center;">59C</p> 

※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및 분양사무소



■ 현장 주소

6단지 - 세종시 마음로 14, 가락마을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7단지 - 세종시 마음안로 13, 가락마을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 분양사무소 주소

7단지 - 세종시 마음안로 13, 가락마을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지하2층 커뮤니티센터 내 다목적실

■ 분양문의 : ☎ 044)-868-2620

■ 홈페이지 주소 : 추후공개